

■ 유아교육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2. 6. 21.>

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(제34조의2 관련)

목적	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
1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
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용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소득금액증명
3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